

파주시한미친선협회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0
----------	-----

제출년월일 : 1999.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주둔 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설치·운영중인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한국측 위원의 구성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 (안 제3조)

나. 협회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 (안 제4조)

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4조의2)

라. 위원장 유고시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5조)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를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의설치 및운영등에관한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내지 7인”을 “위원장을 포함한 10 인내외의 위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다음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를 “다음과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간사는 해당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로 하며, 동항각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당연직

가. 파주시의회 의장

나. 파주시부시장

다. 파주경찰서장

라. 파주교육장

마. 파주세무서장

바. 파주소방서장

2. 위촉직

가. 보건위생기관 관계자

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요식업협회 관계자

다. 여성단체 관계자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한미합동훈련 및 주한미군의 훈련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부대의 이전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관심사항.

3. 국가 또는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중 주한미군부대와 관련되는 사항

4. 기타 주한미군과 지역의 상호 권익 및 친선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임기) ①제4조제2항에 의한 당연직 위원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직 위원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중 “제3조제2항의 구성원 순서에 따라”를 “부시장이”로 하며 동조제3항중 “협의회에 출석하되 발언할 수 없으며”를 삭제한다.

제7조중 “의사교환을 도모하기 위한 비공식이어야 한다”를 “의사교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의 단서의 경우에는 요구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조(구성) ①<u>협회의의 한 국측 구성원은 위원장 1 인과 위원 5인 내지 7인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 다.</u> ②<u>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 중에서 위촉 하며, 간사는 소속직원중 에서 임명한다.</u> 1. <u>시의회</u> 2. <u>경찰서</u> 3. <u>보건위생기간(보건소)</u> 4. <u>관광업체와 유흥 및 요 식업협회</u> 5. <u>기타 유관기관 또는 시 민대표</u>	제3조(구성) ① ----- ----- <u>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u> -----. ② ----- ----- <u>다음 각호와 같이</u> ----- <u>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u> <u>원으로 구분하며, 간사는</u> <u>해당부서의 담당과장이</u> <u>된다.</u> 1. <u>당연직</u> 가. <u>파주시의회 의장</u> 나. <u>파주시부시장</u> 다. <u>파주경찰서장</u> 라. <u>파주교육장</u> 마. <u>파주세무서장</u> 바. <u>파주소방서장</u> 2. <u>위촉직</u> 가. <u>보건위생기관 관계자</u> 나. <u>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u> <u>및 요식업협회 관계자</u> 다. <u>여성단체 관계자</u> 라. <u>기타 위원장이 필요</u> <u>하다고 인정되는 자</u>	협회의 구성의 탄력성 부여 위원의 구성을 당연직과 위촉 직으로 구분
제4조(기능) ① · ② (생략) 1. <u>한미합동훈련 및 주한 미군부대의 이전과 관련 한 지역주민의 관심사항</u> 2. <u>주한미군을 고객으로</u>	제4조(기능) ① · ② (현행과 같음) 1. <u>한미합동훈련 및 주한 미군의 훈련에 관한 사항</u> 2. <u>주한미군부대의 이전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관심사항</u>	협회의의 기능 을 현실과 맞 게 조정

현행	개정안	비고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내부시설 개선, 위생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성병보균자 및 접대부의 선도 4. 마약의 소지 및 판매단속 5. 미 군수물자의 압거래 단속 6. 주한미군기관에 종사하는 한국 고용인과의 노사분규 7. 기타 상호간의 권익 침해 및 친선의 저해 ③위원장은 위원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사임하게 하고 즉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타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 3. 회의참석이 미온적이고 협의회 운영에 소극적일 때 4. 한미친선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3. 국가 또는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중 주한미군부대와 관련되는 사항 4. 기타 주한미군과 지역의 상호 권익 및 친선에 관해 필요한 사항 〈삭제〉 제4조의2(위원의 임기) ①제4조제2항에 의한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에 임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직 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구성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내용생략)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에 출석하되 발언할 수 없으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 부시장이 -----. ② (현행과 같음)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협의회는 매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하며 회의는 원활한 의사교환을 도모하기 위한 비공식이어야 한다. 다만,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회의) ----- ----- ----- -----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 ---	협의회 운영의 공개근거 마련
제8조(회의주관) ①정기회의는 상호 교대로 위원을 초청하여 개최하되 초청한 기관이 주관한다.	제8조(회의주관) ①----- ----- ----- -----, 다만,	

현행	개정안	비고
②·③ (내용생략) 제11조(미결사안의 처리) 현 의회에서 협의되지 못한 사안은 시에서 도위원회에 건의한다. 제12조(건의등) 위원장은 아 래 각호에 대하여 도지사 에게 건의 또는 보고한다. 1. 소속 협의회 개최사항 2. 제9조에 의한 협의회 해산 사항 3.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 의 불상사나 양측의 친선 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항 4. 기타 도의 지위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참고 될 사항 제13조(기타사항) (내용생략)	제7조의 단서의 경우에는 요구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1조(기타사항) (현행과 같음)	경기도협의회 해산